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2652 공갈, 공갈미수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고현욱(기소), 노영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민
배상 신청인(원심) B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4고단678 판결 및 2024초기
414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인용하였는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



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이유를 주장하였을 뿐 위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 보아도 이를 취소·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각각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실시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덕식 _____

 판사 김배현 _____

 판사 정현서 _____